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이 개정(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현장 혼선이 있는 별지서식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다. 지정신청서,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7. ~ 4.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가진 자로 한다.”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의 1호부터 15호까지 장애인 중 각 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의 16호 규정에 따라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을 받은 장애인

제1조의2부터 제6조까지를 각 각 “제3조”부터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서는 개정 규칙에 따른 지정서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 되는 날까지 개정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에서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중증장애인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를 가진 자로 한다.”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의 1호부터 15호까지의 장애인 중 각 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의 16호 규정에 따라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을 받은 장애인
제1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6조(현장조사서)	제3조 ~ 제9조 (현행 제1조의2의 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등)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u> <u>제3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개정 규칙에 따른 지정서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 서식에 따른 지정서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u>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시설	시설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수	총 명	장애인 비장애인	명(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재활시설의 장, 단체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에 배치된 법정 직원은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음)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수행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 운영 법인명 : (법인대표 :)
2. 생산시설의 명칭 :
3. 생산시설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생산시설의 소재지 :
6. 생산품목 및 지정 유효기간

연번	생산품목	지정 유효기간	최초 지정일	비고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위 시설(단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재발급일 : 년 월 일

(뒤쪽)

변경사항 기재란			
<u>연 월 일</u>	<u>변 경 내 용</u>	<u>기록자</u>	
		<u>직위</u>	<u>성명</u>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시설	<u>시설의 명칭</u>	<u>지정번호</u>
	<u>시설의 대표자 성명</u>	사업자등록번호
	<u>시설 소재지</u>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u>[] 기재사항 변경</u>	
	<u>변경 구분</u>	<u>변경 전 변경 후</u>
	☐ <u>시설의 명칭</u> ☐ <u>시설의 대표자</u> ☐ <u>시설의 소재지</u> ☐ <u>생산품목</u>	
<u>[] 분실 (분실 일시 : 분실 장소 :)</u>		
<u>[] 훼손</u>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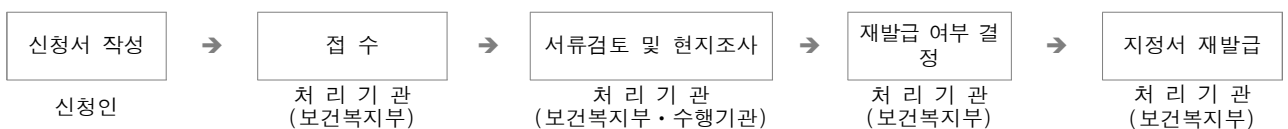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